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4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6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6
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28.

나. 발 의 자 :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11. 28.

라. 상정일자 : 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2. 0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장)

○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기반시설 등 각종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3조)

다.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의함(안 제4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정의함(안 제5조)

마.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정의함(안 제6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해 정의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산림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15. ~ 11. 20.

나) 예고결과: 의견 있음 【붙임 1】 참조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맨발 걷기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바르게 걷기 강사 육성과 바른걸음 지도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동 내용은 조례안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제6조제1항제3호(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조항에 따라 의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반영 결과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강사 육성과 바른 걸음을 지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6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1. 28.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11. 28.

라. 상정일자 : 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2. 0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의 다양한 기대 효과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 거창사과 노지 스마트농업 실리콘밸리 육성 등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들이 확산 추세에 있음.
-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라. 운영의 위탁(안 제7조)
- 마. 거창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스마트 농업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홍보(안 제9조 ~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1. 09. ~ 11. 1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 우리 거창군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와 거창사과 노지 스마트농업 실리콘벨리 육성 등 스마트농업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11. 2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일자 : 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2. 0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그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정함(안 제5조)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에 가정용 감량기기 1대 지원

다. 감량기기 설치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보조금 신청, 반환 등을 정함(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나. 예산조치: 2024년도 4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폐기물관리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보급 지원으로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음식물 수거 및 처리 비용에 수반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건조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의 봉투 및 수거용기 배출에 대하여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연동하고, 재활용 사업도 병행하여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11. 2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일자 : 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2. 0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이동지원센터 기능 등을 정하여 거창군에 사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을 개선함(안 제6조·제7조·제13조)

1) 운행시간 확대: 매일 24시간

2) 이용대상 확대: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급~3급,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

- 3) 운행지역 확대: 군 관할, 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모든 시·군, 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 4) 군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왕복이용 요건을 정함
- 나. 이동지원센터 기능·운영을 정함(안 제14조·제15조)
- 다. 인용법 조문, 법령 재기재 등을 정비함(안 제8조·제9조·제16조, 현행 제15조, 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4·제14조의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899,766천원(국비215,500, 군비 684,266)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27.~11.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23.5.1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운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11. 2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일자 : 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2. 0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거창지역 건축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 지도원의 자격 요건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함(안 제33조)

나. 법령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함(안 제41조)

1) 높이 9미터 이하 또는 9미터 초과 건축물

⇒ 높이 10미터 이하 또는 10미터 초과 건축물

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함(안 별표 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삭 제>
바. 그 밖의 건축물 (단독주택 및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1미터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37조·제58조·제61조
- 2)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80조의2·제85조·별표2
- 3) 「민법」 제24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완화함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0. 30.~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거창지역 건축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11. 2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일자 : 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2. 0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장)

-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에 따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군 자체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되었으나,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비판 등 논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2020년부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6.~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폐지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2020년부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11. 2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1. 28.

다. 상정일자 : 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2. 0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신축함에 따라 종합분석실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 영농 지원으로 거창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분석실 설치·운영,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4조·제9조)

1) 소장에게 분석실 운영·관리업무 위임, 수수료 관련 제외

2) 군에 주민등록 및 경작지를 둔 농업인 이용원칙, 공익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등 이용 가능

다. 분석의 의뢰·제한·활용, 시료의 보관 및 폐기를 정함(안 제5조~제8조)

라. 분석 수수료 및 감면을 정함(안 제9조, 별표 1, 별표 2)

1) 농경지 토양성분, 퇴비·액비 성분, 농업용수 분석: 무료

2)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군 농업인 1점 10,000원, 1년 60,000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제156조·제161조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115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23.~11.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종합분석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농산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이 필요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